탄원서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번호	2026도6826
피고인	김건희
담당 법원·재판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단계	상고심

1. 탄원의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김건희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이미 두 차례 내려진 무죄 판단의 이유가 공정하게 존중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으로 탄원드립니다. 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물을 받았다는 사정과 그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제공받기로 미리 합의했다는 사정은 법률적으로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크기에 앞서 실제로 증명된 행위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2. 두 차례 무죄 판단과 남아 있는 쟁점에 관하여

김건희 피고인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2026년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별도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의 수단이고 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자동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법률적 구별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항소심은 공천에 관여했다는 불리한 사정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이나 별도의 공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과 이 사건 여론조사의 재산상 이익 수수·공모 여부는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사건에 관여한 경위와 실제 실행 행위

여론조사가 누구의 요청과 비용으로 실시되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피고인이 어떤 사전 협의에 참여하였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했다는 사실과 피고인 측의 비용을 대신 내주었다는 평가는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다른 관련자에 대한 판결이나 다른 후보자의 사건을 살피는 일은 도움이 되겠지만, 사람과 시기, 의뢰 내용, 증거가 서로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건희 피고인에게 적용될 판단은 피고인 개인의 의사와 행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를 정중히 청합니다.

4. 피고인의 실제 지시와 그 결과

여론조사 자료가 전달되었다는 사실, 그 자료가 선거운동에 활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 제공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기로 미리 의사를 모았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제공물의 존재만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과 기부·수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별도 항소심은 2026년 10월 7일 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협의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공동체와 공천 관여에 관한 불리한 판단도 제시했습니다. 그 불리한 사정을 지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정치적 관여 정황이 이 사건 정치자금 수수 요건을 대신 증명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5.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별 사정

두 심급의 무죄 판단은 특별한 호의가 아니라 정치자금의 제공·수수에 관한 요건과 증명 정도를 검토한 결과로 이해합니다. 부디 그 법률적 이유가 상고심에서 충분히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공자의 독자적 활동과 피고인 측 의뢰에 따라 비용을 대신 지급한 행위는 그 법률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곧바로 금지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히 살펴주시기를 청합니다.

6. 피고인의 진술과 사건 이후 태도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설명이 다르게 나타난 부분은 재판기록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명 씨의 진술에 관한 평가가 별도 사건들에서 달리 나타난 점도 이 사건에 적용할 때는 피고인의 행위와 증거에 맞추어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단지 무죄라는 결론을 바라는 것뿐 아니라 왜 그 결론이 유지되거나 변경되는지 법률에 따라 분명히 설명되는 재판을 바랍니다. 그러한 신중한 심리가 형사재판을 믿는 시민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7. 무죄 판단의 법률적 이유를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두 차례 무죄로 판단됐고, 그 판단이 유지되는지를 상고심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미 양형 사정부터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선 법률상 구성요건과 증명 원칙이 정확히 적용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상으로 전달된 정보가 선거에 도움이 되었더라도 그것이 곧 재산상 이익의 기부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원심이 밝힌 독자적인 조사 목적과 사전 의뢰·협의 여부를 중심으로 두 차례 무죄 판단의 이유가 법에 맞는지 세밀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8.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원심이 여론조사의 제공과 재산상 이익의 수수 사이에 법률적으로 필요한 연결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끝까지 살펴 주십시오. 특검이 다투는 법률적 쟁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 본인의 고의와 공모에 관한 증명을 생략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의 소망은 결론을 정해 놓은 선처가 아닙니다. 형벌 법규의 의미가 명확하게 적용되고, 법률상 오류가 없다면 두 차례 무죄의 판단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9. 결어

존경하는 재판부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원심이 두 차례 무죄로 판단한 이유와 다른 사건에서 제시된 법률적 쟁점을 서로 구별해 주십시오. 피고인의 행위와 법에서 요구하는 의사합치를 엄격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상 오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 판단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판단이 공정한 형사재판의 원칙에 충실한 결론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참고자료

사건 경과 및 공개 판단

1. 대한민국 대법원 | 주요 재판 안내: 2026도6826 전원합의체

2026. 10. 22. · 같은 상고 사건에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를 함께 심리한 경과.

https://www.scourt.go.kr/supreme/info/JpBoardListAction.work?gubun=2

2. 연합뉴스 | 명태균 정치자금 혐의·전원합의체 회부 경과

2026. 7. 23. · 김건희 1·2심 무죄, 별도 사건의 엇갈린 판단 및 전원합의체 회부 배경.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3142452004

3. 연합뉴스 | 윤석열 여론조사 사건 2심 판결 이유 보도

2026. 10. 8. ·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의사합치 부족과 공천 관여 관련 불리한 인정 부분을 함께 소개.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7204900004

4. 서울신문 | 윤석열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 판결

2026. 10. 7. · 재산상 이익과 사전 의뢰·협의 및 정치자금 기부 고의에 관한 판단 보도.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10/07/20261007500145

5. 연합뉴스 | 대법 전원합의체 10월 22일 추가 심리 보도

2026. 10. 15. ·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의 정치자금 기부 해당 여부를 상고심 핵심 쟁점으로 소개.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5082300004

참고자료

적용 법령과 판단 기준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2026. 7. 1. 시행 · 여론조사 제공과 법률상 정치자금 수수 사이의 요건 구별.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5312707

7.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2026. 10. 2. 시행 · 상고이유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및 제한적인 사실오인·양형부당 사유.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3&lsiSeq=29…

8.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2026. 10. 2. 시행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법정 기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07&lsiSeq=29…

9.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026. 10. 2. 시행 · 공동 실행과 개인의 형사책임을 살피는 기준.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370081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2026. 10. 2. 시행 ·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사정.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1&lsiSeq=29…

인용된 공개 보도의 판결 설명은 판결문 전문 또는 상고이유서 원문과 같지 않습니다. 형벌법규는 각 행위 시기의 적용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